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8서식] <신설 2025. 8. 14.>

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제출인	제작자등의 명칭		
	주소		
	제작자등록번호		
	대표자명		
소프트웨어 업데이트	업데이트의 목적 및 주요 내용		
	업데이트 예상 시행일		
	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차명		
	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		
	업데이트와 관련된 안전기준의 개요 및 내용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과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	수수료
	2.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차의 기능을 추가·변경 또는 삭제하는지를 평가·확인·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	
	3. 그 밖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	없음
안내사항	동일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복수의 차명 또는 제원관리번호의 자동차에서 실시되는 경우 위 “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차명” 란 및 “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” 란에 해당 차명 및 제원관리번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